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현황(단전지구)

1.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로 지정될 위치

- 충북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산34-5 일원

2.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현황

지구명	소재지				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현황			토지소유자	비 고
	시군	읍면	리	지 번	유 형	등 급	현 황		
단전지구	영동	심천	단전	산34-5	붕괴위험	D등급	L=300m, H=25m	밀양박씨 참판공파종종	

※D등급 :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61~80(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 수립필요)

3.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: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

4. 붕괴위험지역 지정 사유

- 점검결과(D등급 61점), 점검결과 비탈면 절리의 발달 등으로 인한 암블력 발생과 풍화 진행에 따른 지반변형 및 균열 등 비탈면 안전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로 인해 저항력의 상실을 초래하여 활동력 증가로 인해 붕괴가 발생됨.

- 낙석방지책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위험절리군 발달과 상단부 절리면 등이 고각으로 형성되어 있어 낙석의 위험성이 높아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 요구

5.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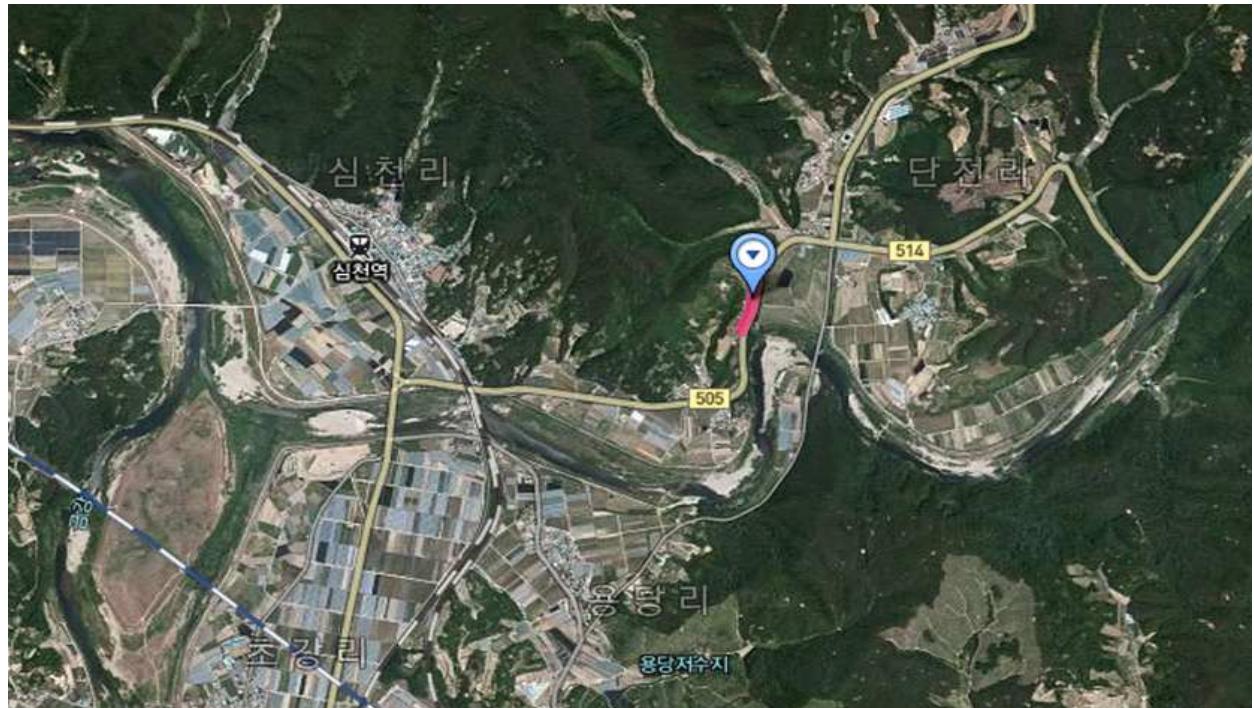
-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

- 토사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(管路)의 설치,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
-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
- 옹벽·축대 및 측구(側溝) 등을 변경하는 행위
-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-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

※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 (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)와 협의하여야 함.

6. 위치도 및 현황사진

○ 위치도



○ 현황사진

